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2650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참 조 조 문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94조, 제218조,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404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2650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4. 20 선고 2004나2379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밀AAAAAA진사공파도곡리소종중(소송대리인 변호사 윤BA)

【피고, 피상고인】 백CA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C 담당변호사 신BB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4. 20. 선고 2004나237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각 말소등기청구 부분의 청구원인은 망 손DA의 상속인들인 손EA, 손EB, 손EC, 손ED, 손EE, 손EF(이하 ‘망 손DA의 상속인들’이라고 한다)의 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망 손DA 등에 대한 명의신탁이 해지된 후 망 손DA의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상속인들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위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면서 망 손DA의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상속에 의하여 승계한 권리변동이 등기부에 기재된 것으로서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 위 상속인들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유효한 이상 원고로서는 위 상속인들을 적법하게 대위하여 위 상속인들의 소유권에 기한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직접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상속인들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에 터잡아 자신들의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들에게 직접 그 말소등기를 구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판단누락이나 판결이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3자가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한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가 명의수탁자나 기타 종전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등기 및 그에 기초한 또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4695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각 말소등기청구에 대하여, 1997. 6. 16. 피고 백CA, 이C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 손DA의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손EA으로부터

매수하였다가 1999. 7. 15. 위 망 손DA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99가단82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9. 12. 23. 자백간주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0. 3. 7.경 확정{다만 그 후 위 사건의 피고들 중 피고 손EA의 주소를 경정(같은 법원 2000카기123호)하였고, 위 경정결정은 2000. 3 17. 확정되었다}된 사실, 그 후 피고 최CD이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이CC의 지분에 관하여 2000. 7. 3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뒤, 위 법리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백CA, 이CC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터잡아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판단누락이나 판결이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은 나아가 피고 백CA, 이CC이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99가단8280호로 받은 승소판결은 손EA, 손EB에 대하여 허위주소로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이 송달된 사위판결이므로 그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 백CA, 이CC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 손DA의 상속인들의 지분을 위 손EA을 통하여 매수하였으나 위 손EA이 그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지체하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아 1999. 7. 15. 망 손DA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99가단82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당시 손EA은 ○○시 ○○○○동 00-0 ○○아파트 ○○동 ○○호에, 손EB는 고양시 ○○구 ○○○○동 00-0 ○○마을 ○○동 ○○호에 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 소장에 그 곳을 위 손EA, 손EB의 주소지로 기재한 사실, ② 손EA이 위 소송이 제기된 직후인 1999. 7. 20.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서울 ○○구 ○○○○동 00-0로 이전하였음에도 그 이후에 송달된 소장, 변론기일 소환장 등의 소송서류를 위 제소 당시의 주소지에서 본인이 계속 송달받은 것으로, 손EB는 위 주소지에서 소장, 변론기일 소환장 등의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것으로 각 송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위 손EA, 손EB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백간주에 의한 피고들 승소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③ 그 후 위 사건의 판결정본이 손EA에 대하여 송달불능되자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된 사실, ④ 이어 피고 백CA의 신청에 의하여 위 사건의 판결에 대해 같은 지원 2000카기123호로 손EF의 주소에 대한 경정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결정정보의 송달에 있어서 위 손EA은 그 결정정보가 위 제소 당시의 주소지에서 송달받은 것으로 송달보고서가 작성되었고, 위 손EB에 대하여는 위 주소지에서 송달불능되어 특수우편에 의하여 발송송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손EA은 위 소송의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위 종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던 가족들을 통하여 소장 등 소송서류를 송달받았지만 법무사에게 상담한 후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들이 손EA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고 제3자로 하여금 손EA을 가장하여 소장과 변론기일소환장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을 받아낸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손EB에 대한 판결은 적법한 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위판결 여부를 문제 삼을 여지조차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런데 위 손EA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소장 부분과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송달되어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된 뒤 그 후 판결정보의 송달불능되자 그 판결정보를 공시송달하였는바, 가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상대방의 허위주소에다가 판결정보를 송달하였다고 하여도 공시송달의 방법을 취하였기 때문에 그 송달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손EA이 아직도 판결정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위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의 재심사유에 해당될 뿐이다.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이 손EA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고 제3자로 하여금 손EA을 가장하여 소장과 변론기일소환장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을 받아낸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판단 자체도 수긍할 수 있다.

이 부분 원심판결 이유 중 위 손EA에 대한 부분은 다소 적절하지 아니하나 위 손EA에 대하여 허위주소로 소송서류 및 판결정보의 송달된 사위판결이므로 그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그 결론은 정당하고,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손EB에 대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누락이나 판결이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